|  |  |  |
| --- | --- | --- |
| **통관 단계의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9호세금감면 신청 및 화물 통관을 한층 더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중국 전자항구 QP 사전등록 클라이언트 세금감면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감면 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에 대하여 통관 단계에서 페이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면세증명>(이하 '<과세•면세증명>'으로 약칭) 두번째 페이지(즉, 세금감면 수속 처리를 위한 세관 제출용 페이지)의 제출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2017년 4월 26일부터 상기 <과세•면세증명>상에 열거된 화물의 통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페이퍼 <과세•면세증명> 또는 그 스캔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과세•면세증명>의 전자 데이터와 신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세관이 종이서류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공하여야 한다.수입화물 통관신고 시 송수화인 또는 통관대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과세•면세증명>의 고유번호를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상의 '비안(備案)번호'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과세•면세증명>의 고유번호는 중국 전자항구 QP 사전등록 클라이언트 세금감면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세금감면 신청인이 페이퍼 <과세•면세증명>(즉, 신청업체 보관용인 세번째 페이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과세•면세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관할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해관총서2017년 4월 21일 |  | **关于在通关环节免予提交纸质《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7年第19号 为进一步便利减免税申请和货物通关，海关总署决定，对通过中国电子口岸QP预录入客户端减免税申报系统申请办理减免税手续并通过了海关审核的，收发货人或受委托的报关企业在进口通关环节无需提交纸质《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免税证明》（以下简称《征免税证明》）第二联（即送海关凭以减免税联）。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自2017年4月26日起，收发货人或受委托的报关企业在申报进口上述《征免税证明》所列货物时，无需提交纸质《征免税证明》或其扫描件。如果《征免税证明》电子数据与申报数据不一致，海关需要验核纸质单证的，有关企业应予以提供。 进口货物申报时，收发货人或受委托的报关企业应按规定将《征免税证明》编号填写在进口货物报关单“备案号”栏目中。《征免税证明》编号可通过中国电子口岸QP预录入客户端减免税申报系统查询。减免税申请人如需要纸质《征免税证明》留存的（即申请单位留存的第三联），可在该《征免税证明》有效期内向主管海关申请领取。 海关总署2017年4月21日　 　　 |